

17 감사부 보고

제104회기 감사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박춘근
서 기 태준호

1. 조직

- 1) 임 원 : 부장 박춘근, 서기 태준호, 회계 양성수, 총무 동현명
- 2) 부 원 : 문금식 김장교 이은철 최준환 김정호 박준유 강만제 최인수 김영구 고정식 정진석 손창호 오광춘 이영민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1. 12(월) 19:00

☞ 장 소 : 신안비치호텔

☞ 결의사항

- ① 외부 전문 회계사 감사 투입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② 정식절차에 따른 접수서류 심의는 감사부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에서 결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개인 접수서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3. 30(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4회기 총회 감사(중간) 수검표를 감사 부원에게 배정 하다.
- ③ 2020년 4월 6일(월) 오전 11시에 감사부 특별감사를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1) 기독신문 건 및 재정집행 건 - 재정부장 이대봉 장로
 - 2)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 관련 건 - 남울산노회장 박종선 목사, 서기 성충영 목사,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
- ④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04회기 총회 감사(중간)를 2020년 4월 10일(금)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 ⑤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에 감사부 특별감사를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1)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소속 충은교회 이단(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에 교회당 매



매에 관련한 탄원의 건 - 경남노회장 김훈 목사, 서기 안영환 목사, 충은교회 박정우 장로, 박봉인 장로, 김덕권 장로

(4)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8. 19(화)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감사부 규정 (「가」감사에 관한 모든 서류는 5년간 보존하기로 하다. 「나」총회 임원회 감사는 한 회기가 지난 후에 감사하기로 하다.)을 추가하기로 하다.
- ② 순천노회 감사부장 친석의 건은 감사부장이 검토 후 특별감사하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9. 25(수) 10:30

☞ 장 소 : 충현교회

☞ 결의사항

- ① 팀장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1팀장 : 이은철 목사, 2팀장 : 최인수 목사, 3팀장 : 최준환 목사, 4팀장 : 김장교 목사
- ② 감사부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를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1. 2(토)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감사부 워크숍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다.
1)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 13일(수)
2) 장소 : 신안비치호텔(전남 목포시 해안로 2)
- ③ 제104회 총회 결의사항 수입의 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④ 감사부 워크숍 답사는 회계 양성수 장로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2. 13(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3회 모든 감사 자료가 해당부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감사부장에게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 2020년 2월 24일(월) 까지 도착하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4회 총회 중간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지적사항등)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 및 논의토록 하다.
- ③ 다음 회의는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3. 9(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직전 감사부장에게 제103회 모든 감사자료 요청 건은 서면제출하므로 받고 보관하기로 하다.
- ③ 총회임원회에서 감사부로 요청한 본부 제104-555호[회기 중 제출되는 감사요청 건 처리에 대하여] 건은 본 감사부는 감사규정에 의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3월 6일에 접수한 [사실조회독촉(2019가합549710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건은 총회 임원회가 감사부에 이첩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⑤ 코로나19 관련하여 제104회 총회 감사(중간) 일정을 2020년 5월 25일(월) ~ 29일(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30일(월) ~ 31일(화)에는 수검표를 서면으로 감사하기로 하다.
- ⑥ 총신대학교 감사는 총회장으로 하여금 감사 지시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⑦ 대전노회에서 감사부로 직접 접수한 총회 은급재단 회계부정 진상조사 탄원서의 건으로 대전 노회장 신종철 목사, 서기 김인호 목사, 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내용을 청취하다.

오후 12시 15분 회계 양성수 장로 기도로 정회하다.

오후 1시 10분 부장 박춘근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⑧ 서주석 집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총회 은급재단 회계부정 진상조사 탄원서의 건에 대해 내용을 청취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4. 10(금) 15:00

☎ 장 소 : 총회세계선교회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감사(중간)을 위해 총회세계선교회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하니 총회세계선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에 재정 청원 토록 건의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0. 8. 14(금) 15: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피감부서의 감사 변경 일정 건 을 보고 받고 요청대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② 은급재단 감사 참고인으로 김기철 목사를 18일(화) 오후 2시 출석 요청하기로 하다.
- ③ 2020년 8월 28일(금) 오후 2시 감사부 임원회의로 모이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20. 8. 21(금) 15:00



☞ 장 소 : 총회세계선교회

☞ 결의사항

- ① 제103회기 총회 예산으로 특별 지원금이 지급된 곳에 사업 보고를 받기로 하고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출이 안 됐으면 환수 조치를 하기로 하다.
- ② 총신대학교는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기로 하다.
- ③ 2020년 8월 28일(금) 오후2시 차기 임원회의에 팀장 최인수 목사와 부원 박준유 목사를 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하다.

3) 감사부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0. 17(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중간감사 일정을 2020년 3월 16일(월) ~ 20일(금)에 하기로 하고, 제104회 총회 정기감사 일정은 2020년 8월 17일(월) ~ 21(금)에 하기로 하다.
- ② 감사부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2019년 11월 12일(화) ~ 13일(수) 까지 하기로 하다.
- ③ 팀장을 추가로 오광춘 장로를 선임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2. 1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에게 직접 접수된 서류 3건에 대하여 감사부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1) [대전노회/총회 은급재단 회계부정 진상조사 탄원서1의 건은 대전노회장 신총절 목사, 서기 김인호 목사를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에 회의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2) [좋은땅교회 이용석씨 외 1명/불법재판의 억울함을 탄원함과 권징조례 제8장 69조에 근거한 재심재판 청구의 건]은 감사부장 수신으로 재판국에 이관하기로 하다.
- ③ 직전 감사부장에게 제103회 감사자료 요청과 중간감사에 필요한 진행사항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8. 28(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남울산노회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다.
- ② 총신대학교 감사(보수, 인사)의 건은 차기 감사부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기로 하다.
- ③ 순천노회 감사의 건은(화해조정위원회)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④ 경남노회 총회 특별감사 지시사항 불이행 건은 본부 제104-95호 문서로 답변을 하였기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 ⑤ 박혜근 목사 감사부장 친전의 건은 답변서와 함께 반려하기로 하다.

- ⑥ 경남노회 관련 감사부 탐장 관련 사건은 별도의 이탈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확인 하고 불법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부가 사과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고 마무리 하기로 하다.
- ⑦ 총회 감사부 제104회 보고서 건은 부장과 서기에 일임하기로 하다.

4) 특별감사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4. 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기독교신문 건 및 재정집행 건으로 총회 재정부장 이대봉 장로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 ②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 관련 건으로 남울산노회 서기 성충영 목사, 전 노회 재판국서기 이광우 목사,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4. 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 건으로 경남노회장 김훈 목사, 서기 안영환 목사, 충은교회 박봉인 원로장로, 김덕권 은퇴장로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 ②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1시에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 건으로 이승기 목사, 박정우 장로, 김현문 장로, 김진석 장로를 회의에 참석요청 하기로 하다.
- ③ 2020년 4월 22일(수) 오후 2시에 기독교신문사관련 건으로 사장 이순우 장로, 출판국장 조재원, 편집국장 강석근을 회의에 참석 요청 하기로 하다.
- ④ 차기회의는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4. 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4. 당일 문답서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가 추가 및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 건으로 이승기 목사, 김진석 장로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다.
- ③ 기독교신문사관련 건으로 사장 이순우 장로, 총무국장 조재원, 편집국장 강석근을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 ④ 2020년 5월 8일(금) 오전 11시에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의 건으로 서현수 목사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⑤ 당일 문답서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 ⑥ 차기회의는 2020년 5월 8일(금)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5. 8(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태준호 장로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의 건으로 박정우 장로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 ③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의 건으로 서현수 목사가 회의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다.
- ④ 총회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의 건은 제104회 총회 중간감사시 자세히 보기로 하다.
- ⑤ 기독교신문사 관련 특별감사 종결의 건은 부장 박춘근 목사와 서기 태준호 장로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⑥ 당일 문답서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6. 19(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의 건, 수도노회 비전교회 김상윤 장로의 건, 총회장상 청원의 건 관련 하여 총회임원회 답변 요청을 받기로 하다.
- ③ 은급재단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 ④ 2020년 7월 3일(금) 오전 11시에 은급재단 건으로 유장춘 목사를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⑤ 차기회의는 2020년 7월 3일(금)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5) 제6차 회의

☎ 일 시 : 2020. 7. 3(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은급재단 건으로 유장춘 목사에게 참석 요청 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에 다시 참석 요청 하기로 하다.
- ③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의 건으로 남울산노회에서 서기 태준호 장로에게 30,000,000원을 계좌(우체국 400200-02-010904)로 입금해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입회 인으로 참석하여 충남노회 아산사랑의교회 윤익세 목사에게 전달하다.
- ④ 차기회의는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6) 제7차 회의

☎ 일 시 : 2020. 7. 31(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은급재단 특별감사건 : 유장춘 목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정기 감사 후 결과를 은급재단에 통보

하기로 하다.

- ③ 8월 1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정기 감사는 8월 18일(화)~21일(금)하기로 하다.
- ④ 정기감사 진행을 위해 추경 1,500만원을 재정부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⑤ 경남노회 충은교회 이승기 목사가 요청한 감사부장 친전의 건은 본인에 대한 진술서를 열람만 가능하고 문서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하다.
- ⑥ 순천노회 노회장 김원영의 감사부장 친전의 건은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가 검토 후 차기 임원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⑦ 차기 임원회의는 8월 14일(금)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제104회기 정기감사 지적사항

▶ 상비부

1. 전도부

가. 업무용 도서를 48권 구입 중 전도 법인국 보관용 이라고 스티커를 붙인 도서는 14권, 비치되지 않은 것은 10권이며 비치된 38권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도서는 21권, 일부는 개인 도서 처럼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 요청함.

- ① 교육전도국은 도서(일반, 연구용) 목록에 정확한 기록과 보관될 수 있도록 할 것
- ② 2020년 8월 28일까지 미 비치된 도서를 비취하고 보고할 것.

나.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의 자술서는 감사부에 보관하기로 할 것.

2. 순교자 기념사업부

가. 순교자기념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사는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잘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에 중점을 둘 것

3. 구제부

가. 당회기에 접수된 구제 지원요청 서류 중 예산의 소진으로 지원되지 않은 구제비는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재 접수토록 할 것.

나. 재해와 질병(감염병 포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므로 특별 구제 대책마련을 강구 할 것

4. 교육부

가.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참가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과다위약금(약800만원)을 지불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5. 농어촌부

가. 기독교신문 광고비가 과다지출 되므로 시정할 것

6. 재판국

가. 재판국은 재판과정 중이고, 재판서류가 계류 중에 있으므로 열람할 수 없기에 감사가 어려움으로 추후 감사가 필요함.

7. 군목부

가. 진중세례식을 코로나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예산 5백만원 중 3백만원을 항목 전용 요청 없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8. 경목부

가. 임원 조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3조 제2항에 근거 위반됨으로 시정할 것 (서울,서북/2명, 중부(인천)/2명)

나. 경찰청 산하 전국 경찰서(청) 경목 현황 파악하고 본 교단에 속한 경목을 별도 관리가 필요함.

다. 일선 경찰서(청) 지원금은 지역별 균등하게 할 것.

라. 경목세미나 참석인원(34명)+임원,강사 등에 비해 행사비가 과다(36,541,750)하게 지출되므로 시정할 것

마. 세미나 시 임원은 등록비가 없으나 그 외 참석자들은 반드시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할 것

9. 규칙부

가. 규칙부장 유고시 대행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 할 것

10. 학생지도부

가. SCE 행사에 관한 모든 지출은 부서 임원회 결의와 상의함으로 진행할 것

▶ 상설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규정(4장 15조)에 기독교신문 광고만 허용했는데 해마다 장로신문에 게재한 것은 잘못됐으므로 시정할 것

2. 역사위원회

가. 사적지로 지정한 교회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

3. 통일준비위원회

가. 찬조금은 총회회계 일원화로 입금 후 지출토록 할 것

나. 통일목적기금은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변상조치 처리키로 할 것

4. 이단대책위원회

가. 행사 중에 회의하면서 회의비 지출은 이중 지출이므로 시정할 것

▶ 특별위원회

1. 정년연구위원회

가.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총대들은 65.04%가 정년 연장을 반대 결과이므로 정년 만70세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105회기 정기총회에 현행대로 할 것과 정년연구위원회는 폐지할 것

2. 전국은퇴여교역자및홀사모쉼터건립추진위원회

가. 계획, 준비, 실행하기에는 장기적 사업으로 계획함이 필요함.

3.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가.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 후에 실시함이 바람직함.

4. 재개발특별위원회

가. 뉴타운 택지 개발 중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청원보다는 총회특별위원회



의 설치는 총회상비부의 사회부나 혹은 이만교회운동본부 내에서 운영하기로 하며 전문위원과 세무사와 건축사를 MOU협약으로 세워가는 것이 좋을 듯 하므로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할 것

5. 교회실사처리위원회

가. 권역별 실사노회에 대한 건은 현재 진행중 이므로 결과는 추후에 보고 할 것

6. 대구동노회수습처리위원회

가. 코로나19 상황속 에서 화합의 노회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썼으나 결국 양분된 노회로 극한의 대치가 되고 있는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여 서로 상처 없이 화합하는 노회로 수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비부산하 위원회

1. 이만교회운동본부

가. 교회개척전도세미나를 2박 3일(2020 6/17~19 공주평화의 동산)동안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참석자가 85명뿐인데 총회 직원이 4명이나 참석해서 여비와 수고비를 받아간 것은 과하므로 수정할 것 (자료는 감사부에 보관)

▶ 산하기관

1. 기독교신문사

- 가. 17개 지사와 본사의 협약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할 것
- 나. 광고료 결손처리에 대한 본사(기독교신문사)에서 이사회와 처리 법안을 협의할 것.
- 다. 기독교신문사에서 지사 영업이익을 조사하여 협력관계로 건전한 관리 나감이 필요함.
- 라. 지사 지대 미수금 처리방안을 간구 할 것

2. 총회교회자립개발원

가. 경상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장부기장을 사용할 것

3. 사회복지재단

가.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하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 절감하도록 할 것

4. 은급재단

- 가. 역대 책임자 중에서 적극적인 범죄자는 반드시 형사상 처벌하고 환수가 가능한 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함.
- 나. 현행 은급재단 이사회 정관을 총회 지도와 은급기금 가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정하고 이사진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함.
- 다. 현행 납골당 문제는 매각처리 되었으나 후속조치 매각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함.
- 라. 법인 이사는 그 직무상 손실을 끼쳤다면 연대 책임을 질 것

▶ 상비부 산하 속회

1.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가. 어느 회기보다 장부정리, 영수증, 서류가 잘 되었으므로 제104회기 총회지원금 재정 삭감한 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

2. 기독교장려면려회 전국연합회

가. 회계 처리시 규정에 맞게 사용하며 임원회 결의에 의해 집행 할 것

3.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가. 예비비에서 사용시 규정에 맞게 사용할 것

▶ 기 타

1. 총회교육개발원

가. 1년 계약직 연구원 직원 기본급여와 복리후생비 구분해서 지급할 것

이유: 기본급과 복리후생비(업무수당) 합산해서 기본급으로 책정할 경우 지출발생은 4대보험 인상과 퇴직금 증산 인상된다.

2.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가. 직원 채용 시는 반드시 결의에 의해서 채용할 것

나. 재정집행은 부서 회계 결재 후에 집행할 것

다. 기독교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집필진들의 집필 기준이 없음.

▶ 감사 평

1. 특별감사(상비부 임원조직) 총회 결의 위반 건

가.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3조 2항에 의거, 모든 상비부는 3개 구도로 시행해야 하는데 4개부서 (규칙부, 경목부, 구제부, 출판부)와 4개 특별위원회(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삼산노회분립위원회)는 규칙대로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시정할 것

나. 지방신학교 지원금(총회결의) 일부(3천만원)를 상비부 회의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총회 재정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다. 감사 수검자료 중 회의록은 정서본 하여 서명날인 후 복사하여 첨부할 것

라.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을 잘 갖춰 놓을 것

마. 회계결산마감(7/31) 이후에는 사업이나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

바. 총회예산 특별지원금은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보고토록 할 것

사. 행사 장소에서 회의 진행 후 회의비는 별도 지출은 하지 말 것



▶ 총신대학교

1. 입학인재개발팀

가. 수입, 지출명세서에 대한 상세내용이 첨부할 것

2. 대외협력홍보팀

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후원이 위축될까 염려되니 홍보와 독려를 통해 활성화 시킬 것.

3. 총신대보사

가. 총신대보사의 노후 된 컴퓨터 2대를 10년 이상 되었으므로 운영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필히 교체해 줄 것.

4. 교육방송국

가. 노후 된 방송 장비를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교육복지팀

- 가. 팀장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이 있으나 세분화된 업무평가서와 직무평가서에 대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함.
- 나. 전산망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요함

6. 총무시설팀 사당생활관

- 가. 생활관 시설관리를 총무 시설팀에 일관되게 관리가 필요함
- 나. 기숙서 건물이 노후(1972년 건축)되어 전면적인 재건축이 필요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을 구성하여 검토하기를 바람.

7. 전산정보팀

가. 총신대학, 총신대학원(신학대학원)의 전산정보시스템의 노후와 구형이기에 최첨단 시스템으로 교체를 위해 투자할 것

8. 총신원보사

- 가. 수입, 지출 내역서 및 광고료에 자세한 내역을 갖추어 놓을 것
- 나. 업체선정에 있어서 2-3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할 것

9. 총무지원처

- 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비할 것
- 나. 총신대학교에서 천거한 공로자(직원 흥대표)를 총회장상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다.

▶ 세계선교회(GMS)

1. 사역부 선교국

- 가. 코로나로 인하여 철수한 가정이 선교지로 돌아갈 때까지 위기, 관리 잘 할 것
- 나. 파송 후 파송교회와 현지선교사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색할 것

2. 행정부 행정국(재정팀)

- 가. 노회 및 교회 파송이사 이사비 납부율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할 것
- 나. 1만 기도 후원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할 것

3. 행정부 행정국

- 가. 정관, 선거관리 규정, 운영규칙, 세칙이 매년마다 수정 및 개정이 되고 있어 불편사항이 없으면 수정되지 않도록 할 것

4. G.M.S 화성요양원

- 가. 요양원 운영상 화성시로 부터 행정조치 문제는 1심, 2심 패소로 60여일 받은 것이 현실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화성시와 협의에 시행할 것
- 나. 행정조치 기간에 시설보안(리모델링)을 잘하여 다시 개원 할 때에는 더 좋은 요양원으로 운영할 것
- 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 퇴직 문제는 직원들과 원만하게 합의 후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라. G.M.S 사무총장에게 모든 업무를 지도 받을 것
- 마. 요양원 건립 시 차용한 14억 변제 계획을 세울 것
- 바. 원장 자격문제는 매뉴얼대로 시행할 것

5. 사역부 훈련국

1. 지적사항

- 가. LMIC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나. 현지인훈련과 현지선교사 재교육은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



제104회기 감사부 특별감사

■ 총노 141-77 소송비용 특별감사 요청의 건

1. 해당자

남울산노회 및 당시 노회장 이동주 목사, 서기 서양원 목사, 울산남교회 당회장 최규돈 목사, 이성택 목사 각각 개인

2. 감사부 특별감사 확인사

- 1) 남울산노회는 (사건번호2016가합34941)대표자 확인의 소와(사건번호 2017카합80450)총회 판결 효력정지가처분소를 제33부민사부(합의)(나)와 제51부민사부(나)에서 각각 노회 및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 바가 분명하고 효력 정지가 처분소는 취하로, 대표자 확인소는 2심에 서 각각 패소 한바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 2) 위 사건에 대하여 총회는 소송위임장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위임장을 김선규 총회장의 명의로 직인으로 2017년 3월30일 각각 윤익세 목사로 발행한 것이 분명하고, 변호인수 4인(문정일, 김일연, 국태준, 박나라 변호사)으로 지정됨과 변호인비 사건 2건에 5,000만원(1인당 1,000만원)과 부과세 포함 5,500만원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 3)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 비용청구를 윤익세목사가 3년에 걸쳐 총회에 청구한바가 분명하고, 총회임원회에서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판비용(변호사비)청구에 관하여 (본부제103-244호(2018.11.22.))를 비롯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토록 회신 및 결의가 수차에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 4) 위의 개인 중 이성택 목사는 당시 재판국원이 감사부에 전부 증언한 바와 같이, 또한 본인의 진술과 같이 5,500만원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확증으로 [해 노회로 보내라 해결해주겠다]는 단언이 있었음은 분명하게 보인다.
- 5) 참고인 당시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의 진술로 위임요청서가 제출된 바도 없고, 임원회 결의사항 또한 없다. 참고인은 총회가 2가지 경우중 위임 시에는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위임장을 해준다고 진술했지만, 전례에 제3자에게 위임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3. 총회 감사부 처리요청 사항

- 1) 총회가 선 지불하고 해당노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해당 노회로 직접 해결하라는 결의가 있었고,
- 2) 해당 노회가 총회가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답신이 없어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를 어김이 분명한바
- 3) 해당되는 남울산노회 및 각각의 개인들이 책임지고 3천만원의 소송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 합니다. (위임당사자의 과도한 법무법인에 맡긴 과정 및 기타 내용으로
- 4) 총회 감사부는 이혜요청에 불응시, 해당 개인에 대하여 별도조치를 감사부 규정과 총회 결의대로 시행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5) 위의 관계처리는 6월달(2020.6.30.) 이내로 감사부서기 계좌로 시행하고, 그 결과 영수증을 총회감사부 서기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 감사부 처리근거

- 1) 관련 사항들에 대한 각 해당자들의 진술서 내용
- 2) 감사규정 제1장 3조/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 및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한다.
- 3) 감사규정 제7장15조/ 결과의 처리 1항, 2항 보완, 개선, 시정명령, 징계조치 각각 상신하는

규정

- 4) 감사규정 제8장22조/ 시정요구 감사결과 변상책임 위법 개선필요시 경고 또는 변상조치 및 지정한 기한 내 이행하고 감사에 통보한다는 1-2항의 규정
- 5) 총회규칙 제3장 3조 18항 및 23항
- 6) 제99회, 제100회, 제101회, 제104회 총회결의 /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총회결의 최종보고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하고, 법원 접수일로부터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사실 확인서

성 명 : 배광식 목사 (남울산 노회 대암교회 당회장)

상기 배광식 목사가 소속된 남울산노회와 대하예수교장로회 총회간에 법정 소송확인으로 인한 남울산 노회 총회결의 의반사실과 총회천서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가? 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온바, 104회기 감사부는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의 [총노제141-77/소송비용 특별감사 청의 건]을 특별감사 하고 남울산 노회로 하여금 3천만원 구상권을 행사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특별감사 조사시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남울산노회와 총회총대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부 결의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위 청구인 소속노회에 대한 특별 감사시 조사에 나타난 확인사항 및 처리결과

- 1) 남울산노회는 (사건번호 2016가합 34941) 대표자 확인의 소와(사건번호 2017카합 80450)총회 판결 효력정기가처분소를 제33부 민사부(합의)(나)와 제 51민사부(나)에서 각각 노회 및 개인의 소송을 진행한 바가 분명하나 남울산 노회가 곧 바로 법원에 위 소를 취하 하였으므로 제94회 제 97회 결의사항에 남울산노회는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2) 다만 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처리는 총회가 선 지불하고 해당노회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총회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해당노회로 직접 해결 하라는 결의가 있었는 바 해당 남울산노회 및 소송에 관련된 개인들이 책임지고 소송비용 3천만원을 처리할 것을 감사부가 지시한바 있었고(2020년 6월) 2020년 7월 3일 남울산노회는 감사부의 지시사항 3천만원을 감사부 입회하에 이행함으로 모두 종결 처리되어 감사부는 제105회기 총회에 보고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종결서류 복사본 첨부)

2. 남울산 노회 소송에 대한 패소시 5년 공직정지에 대한(제94회 제97회 결의사항) 감사부 조사시 나타난 사항확인

- 1) 남울산노회가 총회를 상대하여 고소한 사실은 분명하나, 사건판결 이전에 총회권고를 받아들이고 곧 바로 노회가 결의하고 취하한 사실이 분명하다. (감사시 제출된 노회결의와 취하 증빙자료 복사본 첨부)
- 2) 남울산노회가 위 사건을 인해 제101회기(김선규 총회장) 총회시 노회 천서를 제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나, 제101회기 총회는 불인정하고 남울산노회 총대전을 천서 함으로 제101회기(2016년) 총회에서 배광식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가 가능



- 고 실제로 부총회장에 대한 선거 했음을 확인하였다
- 3) 제102회기 총회에서는 또 다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판결 불이행으로 천서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총회는 불가함을 결의하고 천서를 한바가 있었다.
(제102회기 총회결의 및 요람 p69.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7항)
 - 4) 그 후 총회는 총회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제102회, 104회 총회에서 총대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결의 한바가 있으나, 남울산노회가 한 번도 천서제한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결의 및 선거 및 피선거권에 제한 없었음. 예/ 남울산 노회 정연철 목사(103회기 총회신학 운영위원장) 등)
 - 5) 따라서 남울산노회 천서에 관계된 문제나 남울산노회 총대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104회기 총회감사부 특별감사 조사 결과에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사부가 재확인 하고 사실 확인서를 첨부와 함께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독교신문 제104회 총회 재정부, 제104회 총회 회계 감사요청의 건

1. 해당자 : 제104회 총회 재정부, 제104회 총회 회계

2. 감사부 특별감사 확인사항

- 1) 총회 기관지 기독교신문 이사장과 사장의 명으로 총회 감사부 감사요구서 (55-16 총회 재정부장에 대한 감사요구)에 의거 제104회 총회감사부는 특별감사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 2) 위 기독교신문사의 특별 감사요구처럼 제102회 기독교신문사 이사장 이성화 씨와 사장 남상훈 씨로부터 교단합동 사항에 따른 기독교신문사 재정지원 집행요청의 건이 존재하였고, 제103회 총회 재정부에서 기독교신문사 재정청원에 1억원을 지원하되 총회유지재단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지원허락 한 바를 확인하였다.
- 3) 위 건으로 총회 재정부장 직무정지 요청건에 대한 (본부제104-552호(2020.2.28.) 기독교신문사의 총회요청이 있었고, 총회 임원회는 제14차 총회임원회(2020.2.24.)에서 결의하여 기독교신문사로 회신 처리가 되었음도 확인하였다.
- 4) 당시 총회 회계였던 이대봉 장로에게 기독교신문사가 총회결정 1억원에 대한 총회결의 시행에 대한 지급청원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도 확인되었다.
- 5) 하지만 당시 총회 회계였던 이대봉 장로는 2019년 8월 16일 재정부가 임원의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결의된 문제점과,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제25차(2019,9,4)회의에서 대여금 상환을 위한 광고비 및 공제금 하양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임원회 결정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대봉 장로의 진술 또한 확인하였다.

3. 총회 감사부 처리요청 사항

- 1) 상기건의 기독교신문 청원에 대하여 제103회 총회 임원회의 회신처리와, 제104회기 임원회의 회신처리를 감안하고 총회 특별 감사부의 감사결과는 총결처리 되었음.

■ 제104회 총회 비전교회 당회 및 당회장 채이석 목사 특별감사 건

1. 해당자 : 수도노회 비전교회 김상윤 장로 (제103회기 전국 남전도회 회장)

2. 감사부 특별감사 확인사항

- 1) 총회 제104회기 감사부는 비전교회 당회 및 당회장 채이석 목사의 총회 특별감사 처리에 대

한 탄원서 (비전20191208)를 살펴 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바를 확인 하였다.

- 2) 위 수도노회 비전교회 김상운 장로는 제37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하 전국남전도회 회장으로 직무시 행정 및 예산 처리와 집행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 및 유용행령 등으로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적격함과 제102회기 총회 추경 2천만원을 개인이 사용과 처리로 부정 지출과 부정처리가 됨으로 제103회기 감사부로부터 2천만원 전액 환수조치와 모든 공직(당회, 노회, 총회, 연합기관 등 일체의 공직)에 대한 2년간 정지를 요청받고 해당 노회와 당회로 시행할 것을 총회 감사부가 규정에 의거 지시한 바가 있음을 제104회기 감사부는 확인하였다.
- 3) 위의 건에 대하여 귀 당회 및 당회장의 요청으로 제104회기 감사부가 재차 상세히 살펴본 바, 감사부의 위의 지시와 환수는 감사부 정관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조치 (감사규정 제22조 시정요구)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진행되었는 바, 하자가 없음도 확인하였다.

3. 총회 감사부 처리요청 사항

- 1) 상기 건에 대하여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 감사부에서 위에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다.
- 2) 2019년 제103회 총회 특별감사시 사실 확인서 이희근, 반재부 장로를 비롯하여 전국남전도회 사무간사 김성애의 자술서, 당사자 김상운 장로의 본인자술서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부가 2년 공직 정지를 지시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또한 감사부의 임의 작성 기한이 아니라 본인이 진술서에 향후 2년간 모든 공직(노회, 총회, 연합회)에서 활동을 금하겠고 추경경비 2천만원도 2019년 4월 5일까지 총회에 환불하겠다는 자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비전교회 김상운 장로에 대하여 총회 감사부는 본인의 자술서처럼 스스로 자숙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나, 귀 당회와 담임목사의 탄원서를 근거로 해서 당회에서 시무관계의 건은 해 당회에 위임하여 근신기간 행정처리 시무복귀 시킬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 4) 하지만 노회와 총회의 관계는 귀 당회의 처리와는 별개의 처리회로서 그 회에서 처리함이 마땅한 바, 본인의 요청 진술대로 2년간 정지함이 맞다고 확인 합니다.

4. 총회 감사부 처리근거

- 1) 관련 사항들에 대한 각 해당자들의 진술서 내용 (이희근, 반재부장로 및 사무간사 김성애의 진술서 김상운장로의 자술서)
- 2) 감사규정 제1장 3조/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 및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3) 감사규정 제7장15조/ 결과의 처리 1항, 2항 보완, 개선, 시정명령, 징계조치 각각 상신하는 규정
- 4) 감사규정 제8장22조/ 시정요구 감사결과 변상책임 위법 개선필요시 경고 또는 변상조치 및 지정한 기한 내 이행하고 감사에 통보한다는 1-2항의 규정
- 5) 헌법 권.제3조 및 제5조
- 6) 비전20191208 김상운장로 총회특별감사 처리지시에 대한 탄원서 및 전 당회원 결의와 서명의 요청서에 의거

■ 경남노회 총은교회 이승기 목사 특별감사의 건

1. 해당자 : 경남노회 총은교회 당회장 이승기목사 및 당회원.
2. 감사부 특별감사 확인사항



- 1) 경남노회 층은교회 2017년 3월경 부동산처리 매각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 선교협의회)에 매각 처리건에 관해 감사부가 사실한바, 층은교회는 사회 통상적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 전 YES부동산의 중계로 MOU를 맺는 과정이 있었고, MOU에 계약 성사가 되지 않을 시 위약금 1억3천6백만원을 배상한다는 약정서가 존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 2) 위 사건에 계약 전 층은교회는 민법제 276조에 해당되는 사회법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공동의회를 합법적으로 열어 회의결과 매각전체를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위임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회는 위에 MOU를 근거로 일반사회 통상적 계약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약 시 계약금과 동시에 중도금을 받음으로 계약이 잘못되었을 시 법정소송 없이는 본 부동산을 해지할 수 없도록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상식이하 방법으로 계약과 중도금이 처리됨을 확인하였다.
- 3) 위 사건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수차에 걸쳐 교회재정부 통장이 아닌 목사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된바가 있었으며 입금시 입금자가 하나님의교회로 되어있는 바도 확인되었다.
- 4) 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함에도 중개사를 통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법원에 제출된 증빙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 5) 당회장 이승기 목사는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시 의제에도 없던 담임목사 신임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었고 재차 신임을 받는 절차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재신임을 받았음도 확인하였다.
- 6) 위의 사건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반발로 별도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부동산매매 계약의 해지 및 반환소송을 진행한바가 있으며, 1-2심 모두 패소함으로 이단 하나님의교회에 매매가 확정되었음도 확인되었다.

3. 총회 감사부 처리요청 사항

- 1) 상기 교회와 당회는 매각의 절차인 교인의 총의가 분명히 있었고, 당회에 위임된 바도 분명 하지만
- 2) 해당 교회 당회가 매각에 있어서 과정도 정당하지 못하고, 당회장은 헌법에 위임된 위임목사로서 막중한 책임 하에 진행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다. 당회장은 당회원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음과, 매매성사가 어려울시 MOU위약금의 부담으로 모든 과정을 당회원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변호를 하나,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들도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며, 또한 목사는 위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서약을 어기고 공동의회 현장에서 의제에도 없던 위임목사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여 교회헌법을 어긴 사실과, 당회원들이 매매 전체를 주도하였다 하나, 당회장의 위임으로 처리함이 분명하고, 매매계약 해지를위한 일반법정에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의회와 1-2차소송 조정판결문에 '처음부터 이단에게 매각하는 매각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명시된 것처럼 당회장과 당회원들도 인지하고 매매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단에게 매매하여 총회결의를 어긴것이 분명한 한바
- 3) 해당되는 경남노회는 위 매각에 관계된 층은교회 당회장 이승기목사에 대하여 위법에 상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노회서기의 진술처럼 현재 고소건이 해 노회에 접수되어있는바 속행 처리를 하실 일.
- 4) 경남노회는 매각에 관계된 층은교회 매매에 관계된 당회원에 대하여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해 당회에 지시하실 일.
- 5) 경남노회는 위의 관계된 층은교회 처리에 대한 시행 결과를 총회감사부 서기에게 8월 31일 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 감사부 처리근거

- 1) 관련 사항들에 대한 각 해당자들의 진술서 내용 (박정우, 김진석, 박봉인, 김덕권 시무 및 은퇴 원로장로, 김훈, 안영환. 이승기목사 진술)
- 2) 감사규정 제1장 3조/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 및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3) 감사규정 제7장15조/ 결과의 처리 1항, 2항 보완, 개선, 시정명령, 징계조치 각각 상신하는 규정
- 4) 감사규정 제8장22조/ 시정요구 감사결과 변상책임 위법 개선필요시 경고 또는 변상조치 및 지정한 기한 내 이행하고 감사에 통보한다는 1-2항의 규정
- 5) 헌법제10조, 제11조 및 권제3조
- 6) 제101회 총회결의 / 마. 교회불법매매 관련
 - * 평남노회장 이상열씨가 혐의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대표 및 목양권양도와 이단에게 교회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교회매매로 처리의 건과
 - * 삼산노회장 이봉철씨가 혐의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 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대로 및 목약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하다.로 총회결의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